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214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022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2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699백만원에서 1,337백만원으로 638백만원 증가하였고,

나.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240백만원에서 878백만원으로 638백만원 증가하였음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1,144	1,782	638
예탁금회수	0	0	-
예치금회수	699	1,337	638
이자수입	176	176	-
기타수입	269	269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1,144	1,782	638
비용자사업	801	801	-
융자성사업	100	100	-
기본경비	3	3	-
예치금	240	878	638

Ⅲ. 검토의견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6억 3,8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6억 3,800만원)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6억 3,800만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재원을 여유재원으로 지출계획하고자 동 계정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관련 기준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265.8%, 6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표 3-1〉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출합계	1,144	1,782	638	55.8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901	901	-	-
일 반 예 산 (재 무 활 동)	240	878	638	265.8
보 전 지 출	240	878	638	265.8
여 유 자 금 예 치	240	878	638	265.8
행 정 운 영 경 비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3	3	-	-

※ 자료근거 :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지출계획, ②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2. 5.25) 재구성

○ 아울러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용자성사업, 융자성사업,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①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②일반예산(재무활동), ③행정운영경비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

- 지난 '22년 4월에도 동 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처럼 의회에 제출된 다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정책사업명을 임의로 기재한 사례가 지적된 바
-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